

낙시 관리 및 육성법

[관계법령집]

2012. 9.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목 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1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고시 >

▣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97
-----------------------	----

▣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101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낙시 관리 및 육성법」 (3단)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	제1조(목적) 7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7	제2조(낙시 대상 수산동물) 7	
제3조(적용범위) 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2장 낙시의 관리	제2장 낙시의 관리	제2장 낙시의 관리
제5조(낙시제한기준의 설정) 9	제3조(낙시제한기준) 9	
제6조(낙시통제구역) 10	제4조(낙시통제구역의 공고) 10	제2조(낙시통제구역 안내판) 10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12	제5조(낙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12	제3조(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12
제8조(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12	제6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13	
제9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13		
제3장 낙시터업	제3장 낙시터업	제3장 낙시터업
제10조(낙시터업의 허가) 14	제7조(낙시터업의 허가) 14	제4조(낙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4
제11조(낙시터업의 허가기준) 16	제8조(낙시터업의 허가기준) 16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17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17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17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18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18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18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18 제15조(원상회복 등) 20 제16조(낙시터업의 등록) 23 제17조(낙시터업의 등록기준) 24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24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24 제20조(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25 제21조(낙시터업의 승계) 27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8 제23조(폐쇄조치) 28 제2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30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20 제12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21 제13조(낙시터업의 변경등록) 23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24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25	제7조(행정처분기준) 18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20 제9조(이행보증금의 반환) 21 제10조(낙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3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24 제12조(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25 제13조(낙시터업의 승계) 27 제14조(낙시감독공무원의 증표) 28 제1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30
제4장 낙시어선업	제4장 낙시어선업	제4장 낙시어선업
제25조(낙시어선업의 신고) 31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32 제27조(영업구역) 33 제28조(승선정원) 35 제29조(낙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35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36	제16조(낙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31 제17조(영업구역) 33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33	제16조(낙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31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32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33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 37 제32조(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 38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 38 제34조(출항의 제한) ······ 39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39 제36조(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 41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 41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 42 제39조(폐업신고 등) ······ 43	제19조(출항의 제한) ······ 39	제19조(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 38 제20조(출입항 신고 등) ······ 38 제21조(폐업신고) ······ 43
제5장 미끼의 관리	제5장 미끼의 관리	제5장 미끼의 관리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 44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 44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 44	제20조(미끼기준) ······ 44	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 44
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 46 제44조(우수낙시터의 지정 등) ······ 48 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48 제46조(명예감시원) ······ 50	제21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48	제23조(우수낙시터의 지정기준 등) ······ 48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50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7조(교육·홍보) 51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51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48조(보험 등 가입) 52	제22조(보험 등 가입) 52	
제49조(수수료) 53		제26조(수수료) 53
제50조(출입·검사 등) 54		제27조(출입·검사 등) 54
제51조(청문) 55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6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6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57		
제54조(양벌규정) 59		
제55조(과태료) 6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0	
	부칙 63	부칙 63
부칙 63		
	별표 69	별표 77
		별지 8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란 낙시대와 낙시줄·낙시바늘 등 도구(이하 “낙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낙시인”이란 낙시터에서 낙시를 하거나 낙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낙시터”란 낙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낙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낙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낙시인이 낙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낙시 대상 수산동물)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5. “낙시터업자”란 낙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6. “낙시어선업”이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p> <p>7. “낙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낙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p> <p>8. “낙시어선업자”란 낙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p> <p>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p> <p>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p> <p>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p> <p>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낙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낙시의 관리</p> <p>제5조(낙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낙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의 구체적</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낙시의 관리</p> <p>제3조(낙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낙시의 관리</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낙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낙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낙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낙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낙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조(낙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낙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낙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낙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낙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낙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p>제2조(낙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낙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낙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낙시 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p>	<p>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낙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 낙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낙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2. 제5조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p>제8조(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낙시도구(이하 “유해 낙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p>	<p>제5조(낙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낙시도구를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또는 사용하는 경우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낙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p>제6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p>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시설</p> <p>나. 국공립연구기관</p> <p>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p> <p>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p> <p>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p> <p>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낙시 도구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낙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낙시터업</p> <p>제10조(낙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낙시터의 위치·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②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낙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p>	<p>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낙시터업</p> <p>제7조(낙시터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의 명칭 2. 낙시터 관리선 3. 낙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 <p>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 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낙시터업</p> <p>제4조(낙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낙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算定) 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낙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일한 위치의 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다.</p>	<p>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낙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 및 낙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p>세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사본(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낙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낙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11조(낙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p>제8조(낙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낙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낙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낙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낙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낙시터업의 경우에는 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p>	<p>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낙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낙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 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p>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해당 구역의 면허나 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p> <p>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낙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낙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낙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p>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낙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낙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낙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4.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낙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낙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낙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낙시터업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낙시터에 설치한 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낙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낙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낙시터업을 폐업한 자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p>	<p>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p>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낙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낙시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낙시터의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할 때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행보증금을 낙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낙시터업 허가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낙시터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p>제9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예치된 낙시터의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은 경우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와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즉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16조(낙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낙시터의 위치와 구역, 낙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② 낙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낙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낙시터의 명칭 3. 낙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 	<p>제10조(낙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낙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낙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낙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료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17조(낙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p> <p>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낙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낙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낙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낙시터업자</p>	<p>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낙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p>	<p>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낙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낙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낙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낙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낙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낙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3.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낙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경우 4. 제17조의 낙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낙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p>제20조(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낙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p>	<p>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p>	<p>제12조(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낙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낙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낙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낙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p>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p>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의 서식지·산란지의 파괴·훼손 금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3. 그 밖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21조(낙시터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p>		<p>제13조(낙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낙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낙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낙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을 승계한 낙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p> <p>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을 승계한 낙시터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을 승계한 낙시터업자가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낙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낙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3조(폐쇄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낙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4조(낙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낙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1. 제10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p> <p>2. 제14조제1항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해당 낙시터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p> <p>2. 해당 낙시터가 적법한 낙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p> <p>3. 해당 낙시터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낙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낙시터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낙시터를 폐쇄하려면 미리 해당 낙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터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2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낙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p>제1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낙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낙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낙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낙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낙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낙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낙시터업자로부터 낙</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낙시어선업</p> <p>제25조(낙시어선업의 신고) ① 낙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낙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낙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낙시어선업</p> <p>제16조(낙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낙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이 25년 이하인 강선(鋼船)·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일 것 3. 낙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추 것 <p>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낙시어선업</p> <p>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낙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낙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낙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낙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p>	<p>모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낙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낙시어선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9. 낙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p>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낙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낙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7조(영업구역)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p>	<p>제17조(영업구역) 낙시어선업자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낙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p> <p>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p>	<p>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 현황 2. 낙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 현황 <p>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낙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p>	<p>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요청구역의 낙시어선업 실태조사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p> <p>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p> <p>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에 따른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 	<p>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p> <p>3.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p> <p>③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p> <p>①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p> <p>⑤ 관계 공무원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제32조(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낙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낙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낙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p>		<p>제19조(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p> <p>제20조(출입항 신고 등)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업자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p>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p>	<p>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의 의견을 들어 낙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을 일시정지 3.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p> <p>제36조(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제35조제2항에 따른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시어선의 승객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 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 청장은 낙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 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 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2.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 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을 위반한 경우 6. 낙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7. 낙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를 위반하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한 경우</p> <p>8.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폐업신고 등) ① 낙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낙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제21조(폐업신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낙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 2. 낙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미끼의 관리</p> <p>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폐기 등의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를 압</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미끼의 관리</p> <p>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소재(所在)를 6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p> <p>3. 낙시어선이 침몰한 경우 : 침몰한 날</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미끼의 관리</p> <p>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p>		<p>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등 조치 대상 미끼의 종류 및 수량 2. 폐기등 조치의 이행기간 <p>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 방법 2. 그 밖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p> <p>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p>	<p>④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실적 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p>⑤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령권자에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명령권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낙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낙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낙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낙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낙시의 현황과 낙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낙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44조(우수낙시터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낙시터 중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낙시터를 우수낙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우수낙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우수낙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④ 우수낙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낙시터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p>	<p>제23조(우수낙시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낙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낙시터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낙시터업자가 법령(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그 밖에 해당 낙시터의 시설·장비 및 수질 현황 등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낙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낙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낙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우수낙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낙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p>	<p>제21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 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낙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낙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낙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낙시문화 홍보 사업 3. 낙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낙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낙시 대상 어종의 개발·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낙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46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낙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낙시인 및 낙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낙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p>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낙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낙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낙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47조(교육·홍보) ① 낙시터업자와 낙시어 선업자는 낙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p>		<p>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③ 명예감시원은 낙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과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2. 낙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낙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낙시터의 수질 및 위생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48조(보험 등 가입)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낙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22조(보험 등 가입) ①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낙시터업자의 경우 :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낙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p>	<p>4. 낙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낙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21조제3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제25조제1항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 	<p>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p> <p>2. 낙시어선업자의 경우 :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낙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p>	<p>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p> <p>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낙시터의 지정 을 신청하는 자</p> <p>제50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낙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과 미끼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낙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보 관하는 자, 낙시터업자, 낙시어선업자, 미 끼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 에 출입하여 시설·장부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2.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낙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낙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낙시어선 4. 미끼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 등 		<p>제27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 관련 사업의 지 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0 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 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장 소에 대한 출입·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 여야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낙시터업자 또는 낙시어선업자가 제7조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낙시터 또는 낙시어선에 대한 출입·검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6 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그 밖의 낙시 관련 장소</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낙시터업자, 낙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낙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영업폐쇄 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낙시터 지정의 취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낙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낙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낙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장·</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낙시 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른 낙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낙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4.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이나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p> <p>5.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p> <p>2. 제16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자</p> <p>3.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방류 금지 어종을 낙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낙시터에 방류한 자</p> <p>4.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낙시어선업을 한 자</p> <p>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p> <p>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p> <p>8.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p> <p>9.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낙시어선업을 계속한 자</p> <p>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낙시 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낙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낙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낙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p>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p> <p>9.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p> <p>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1.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12.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자</p> <p>13. 제47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p> <p>1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p> <p>1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낙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낙시어선업을 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낙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폐업신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낙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p> <p>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낙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한다.</p> <p>제3조(낙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낙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3호 중 “「낙시어선업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②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4조(낙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낙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시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낙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낙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낙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p> <p>②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낙시어선업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p> <p>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각 삭제한다.</p> <p>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호나목 중 “「낙시어선업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p> <p>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4조제2항 중 “「낙시어선업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제5조(낙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낙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시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낙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낙시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낙시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6조(낙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80조제1항제12호 중 “ 「낙시어선업법」 제17조”를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로 한다.</p> <p>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4. 「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낙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낙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낙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낙시어선업법」에 따른다.</p> <p>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낙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낙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p> <p>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2) 중 “「낙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p> <p>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호 중 “「낙시어선업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p> <p>④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6항제5호 중 “「낙시어선업법」 제2조”를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뉘싯대와 뉘싯줄·뉘싯바늘·뉘싯봉 등 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비고: 용출(溶出) 허용기준에 대한 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2]

뉘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뉘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기준
1. 뉘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	가. 뉘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줄 2) 소화기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	추락사고 발생 시 뉘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부상당한 뉘시인에 대한 응급처치에 적합할 것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선체(船體) 2) 배수설비 3) 계선 및 계류설비 4) 전기설비 5) 구명 및 소방 설비 등 안전설비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부양성 및 복원성이 있는 선체일 것 시설물의 규모에 적합한 설비일 것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시설물의 위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설비일 것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기계의 안전성에 적합한 설비일 것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2. 뉘시인의 편의에 필요한 시설·장비	가. 뉘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화장실 등 위생설비 2) 수거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뉘시터를 이용하는 뉘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뉘시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구분	종류	기준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화장실 등 위생설비 2) 쓰레기통 등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수상시설물을 이용하는 낚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수상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3.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가. 낚시터 관리 시설 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 다. 낚시터 관리선(낚시터를 관리하거나 낚시인을 수상시설물 등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낚시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낚시터의 운영·관리 및 비상상황의 전파 등에 적합한 시설일 것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수량과 세부 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종류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이나 낚시를 이용하여 낚시터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별표 4]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구멍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조끼. 이 중 20%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멍줄 1개 이상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어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다. 핸드레일 라.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마. 자기전화등 1개 이상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5]

미기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미기의 종류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1. 가공미끼(어분·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	<p>가. 다음의 물질은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2) 생배설물, 소변, 장 내용물, 수술 후 적출물(반추위 추출물은 제외한다) 3) 목재보호제(약품) 처리를 한 나무 또는 톱밥 4)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5)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p>나. 다음의 물질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만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물질명</th> <th>허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비소(As)</td> <td>10mg/kg 이하</td> </tr> <tr> <td>크로뮴(Cr)</td> <td>100mg/kg 이하</td> </tr> <tr> <td>카드뮴(Cd)</td> <td>2.5mg/kg 이하</td> </tr> <tr> <td>인(P)</td> <td>2.7% 이하</td> </tr> </tbody> </table>	물질명	허용기준	비소(As)	10mg/kg 이하	크로뮴(Cr)	100mg/kg 이하	카드뮴(Cd)	2.5mg/kg 이하	인(P)	2.7% 이하
물질명	허용기준										
비소(As)	10mg/kg 이하										
크로뮴(Cr)	100mg/kg 이하										
카드뮴(Cd)	2.5mg/kg 이하										
인(P)	2.7% 이하										
2. 인조미끼(납·철·세라믹 등 금속성·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p>다음의 물질은 용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만 인조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물질명</th> <th>용출 허용기준(mg/kg)</th> </tr> </thead> <tbody> <tr> <td>납(Pb)</td> <td>90 이하</td> </tr> <tr> <td>비소(As)</td> <td>25 이하</td> </tr> <tr> <td>크로뮴(Cr)</td> <td>60 이하</td> </tr> <tr> <td>카드뮴(Cd)</td> <td>75 이하</td> </tr> </tbody> </table> <p>비고: 용출 허용기준에 대한 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p>	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3)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서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위반행위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실 또는 사업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서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 5)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1호	20	40	80
나.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2호	50	50	50
다.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3호	80	80	80
라.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4호	75	150	300
마.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제1호	100	100	100
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5호	75	150	300
사.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6호			
아. 법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	법 제55조제2항 제2호			

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자.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 제3호	10 20 40		
차.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7호	100	200	300
카.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하거나 조종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2)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8호	30 50	60 100	120 200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 제4호	5	10	20
파.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제5호	100	100	100
하.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9호	75	150	300
거.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제6호	100		
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10호			

1)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200 300	300 300
다. 법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 제7호		10 20 40	
러.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11호	75	150	300
머.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12호	300	300	300
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13호	50	75	1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14호	300	300	300
어.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제15호	300	300	300

3. 개별기준의 적용

가. 제2호가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더목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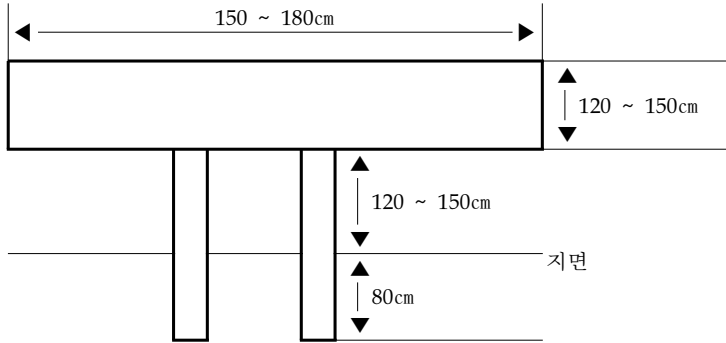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별표 1]

낙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 두께 및 재질: 3mm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알 립

1. 이 지역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낙시통제구역입니다.
 2. 낙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래

가. 통제 내용: 낙시 금지
 나. 통제 사유: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라. 통제 기간:

년 월 일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1) 낙시터업자의 경우: 6개월
 - 2) 낙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낙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1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양식 어종을 낚시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6호	허가취소		

나.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17조의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낚시어선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2)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폐쇄		
3)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영업폐쇄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가)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 아닌 경우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아닌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나)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초과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초과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강선(鋼船)·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인 경우				
다) 낚시어선에 영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5)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7)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8)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별표 3]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검은색

2) 바탕: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낚시터업 [] 허가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자원조성실적	실적		참재자원량		
	부대시설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진단 및 제16조제1항 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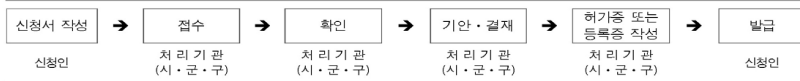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신청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료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낚시터업 변경 [] 허가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등록)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 사유	가. 나.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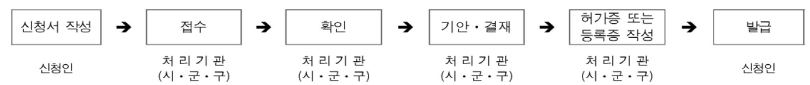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료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h2 style="margin: 0;">낚시터업 허가증</h2>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낚시터	허가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부대시설		
	유효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20px;">직인</div> </div>			

210mm×297mm[백상지 120g/㎡]

낚시터업 [] 허가 []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유효기간 부터 까지 (년간)	
	연장기간 부터 까지 (년간)	
	연장 신청 횟수 (허가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 회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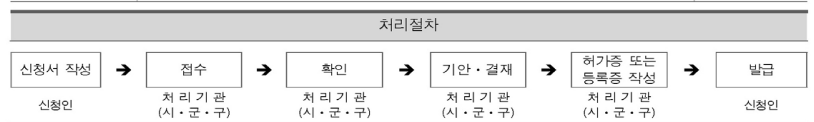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명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료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신청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허가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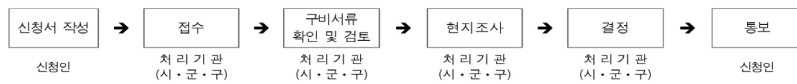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허가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원상회복 의무 이행 또는 면제 내용			
	이행보증금 종류 [] 현금 [] 보증서·증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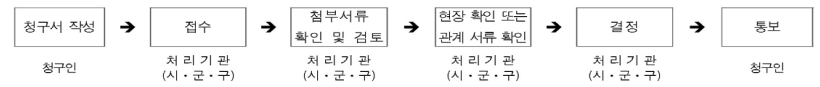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h2 style="margin: 0;">낚시터업 등록증</h2>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낚시터	등록번호	년도	낚시터업 등록	제 호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부대시설			
	유효기간	. . . 부터 까지 (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고, 뒤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승계하는 사람(법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승계받는 사람(법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지위승계 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그 밖의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항

적발일	위반 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행정처분일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주 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 명 주 소	(서명 또는 인)

* 양도인의 서명은 양도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낙시감독공무원의 종표

(앞쪽)

제 호

낙시감독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홍길동(한자)
HONG, G. D.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55mm×85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낙시감독공무원증

번 호: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위 사람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4항에 따른 낙시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낚시터업 신고서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명			
		허가(등록)번호			
신고내용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어선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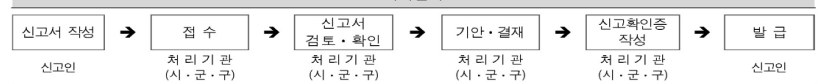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명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동원수산업진흥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료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수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시·군·구)	→ 확인 처리기관 (시·군·구)	→ 기안·결재 처리기관 (시·군·구)	→ 신고확인증 작성 처리기관 (시·군·구)	→ 발급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낚시어선업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선원 중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영업구역				
<p>「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210mm×297mm[백상지 120g/㎡]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요청합니다.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요약)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위치와 면적	행정구역, 각 지점의 경위도 및 면적 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다른 도와의 관계	

- 붙임: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요청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 같.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출입항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번호	어선의 명칭	
신고인	선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명세	등록번호	톤수	승선 정원	
	속력	통신기	선적지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신고사항

일시	출항지	낚시장소	출항 예정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출입항 신고 기관장	입항		
			일시	장소				일시	장소	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고사항

일시	출항지	낚시장소	출항 예정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출입항 신고 기관장	입항		
			일시	장소				일시	장소	확인 (서명 또는 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항을 신고합니다.

○○○출입항신고기관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승선자명부(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압류종	국산품	수입품
기호			
번호			
압류품 제조업자	성명		상 호
	소재지		
압류품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	성명		상 호
	소재지		
압 류 품 명			
압 류 수 량			
압 류 사 유			
압 류 일 시	시 분		
품목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압 류 장 소			
<p>「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압 류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백상지 12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허가(등록)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호
	허가(등록)연월일		
	낚시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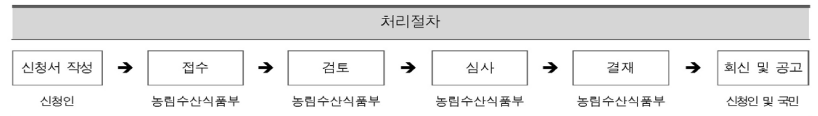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낚시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우수낚시터 지정서

1. 낚시터명: (허가·등록번호:)

2. 사업자명: (생년월일:)

3. 소재지:

4. 우수낚시터 지정 내용:

위 낚시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

(앞쪽)

제 호

낚시명예감시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홍길동(한자)
HONG, G. D.

농림수산식품부

55mm×85mm[인쇄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낚시명예감시원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에 따른 낚시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고시

- 1.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97**
- 2. 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101**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86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낙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시장에게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낙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별첨 1]으로 한다.
 - 가. 북위 37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05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북위 37도 04분 25초, 동경 126도 23분 05초

다. 북위 37도 04분 75초, 동경 126도 27분 90초

라. 북위 37도 07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80초

마.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1분 2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중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중전의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89호)는 폐지한다.

[별첨 1]

경기도·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위치와 구역도(제2조제2호 관련)





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2-276 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시설물”이란 낙시터에 낙시인이 낙시를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遊型) 시설물을 말한다.
2. “부력체”란 수상시설물의 하부구조물을 말한다.
3. “상부구조물”이란 낙시인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부력체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4. “선체”란 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설비 등을 제외한 수상시설물의 몸통을 말한다.

5. “수상시설물의 길이(L)”란 수상시설물 부력체의 긴 면 외면간의 거리를 말한다.
6. “수상시설물의 너비(B)”란 수상시설물 부력체의 짧은 면 외면간의 거리를 말한다.
7. “수상시설물의 깊이(D)”란 수상시설물의 바닥 상부 외면에서부터 부력체의 하부 외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8. “낙시터 관리선”이란 낙시터를 관리하거나 낙시인을 수상시설물 등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어선 또는 선박을 말한다.
9. “다리”란 수상시설물과 육상을 연결하기 위하여 만든 연결용 다리를 말한다.

제3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수상시설물 또는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상시설물 등의 기준적용 특례) 수상시설물 및 낙시터 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최대수용인원 계산) ① 수상시설물이 없는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은 낙시인이 동시에 낙시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에서 낙시터업자가 요청하는 인원으로 한다.

② 수상시설물이 있는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은 수상시설물 외의 장소에 낙시인이 동시에 낙시할 수 있는 인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을 합산한 인원의 범위에서 낚시터업자가 요청하는 인원으로 한다.

1. 낚시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상부구조물이 있는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상부구조물 바닥면적(가구 등 고정된 설비가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이하 같다)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인원
 - 가. 모양이 바른 장소의 경우에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
 - 나. 모양이 바르지 못한 장소의 경우에는 전·중·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
2. 낚시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은 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산된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인원

제2장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제1절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6조(구명부환) ① 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25미터 간격으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하며, 구명부환에는 「어선설비기준」 제55조 제5항에 적합한 구명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 낚시터의 경우에는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

환을 낚시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적절하게 분산하여 비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명부환 대신에 드로우 백(throw bag)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명줄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구명부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선설비기준」 제25조에 적합한 구명부환
 2.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구명부환

제7조(소화기) ① 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식 소화기를 50미터 간격으로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 낚시터에는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를 낚시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적절하게 분산하여 비치할 수 있다.

1. 포말소화기
2. 분말소화기
3. 탄산가스소화기
- 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선설비기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규정에 적합한 소화기
 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기
 3.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소화기

③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기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소화기를 박스 등에 보관 시에는 그 외부에 소화기라고 표시 하여야 한다.

제8조(구급약품) 낚시터에는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2절 낚시인의 편의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9조(화장실 등 위생설비) ① 낚시터에는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및 최대수용인원 100명당 1개 이상의 세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시설물 각각에 화장실 또는 세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수상시설물의 최대수용인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은 낚시인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형태이고, 분뇨가 수면으로 배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환기 및 통풍을 위한 창 등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세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 다만,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충분한 조명(자연 채광을 포함한다) 및 환기·통풍이 될 것
3. 세면대는 낚시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균열·벗겨짐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재

료로 제작된 것일 것

제10조(쓰레기통의 비치) 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50미터 간격으로 1개 이상의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쓰레기통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제3절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11조(낚시터 관리시설) 낚시터에는 낚시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송시설) 낚시터에는 낚시터 전 구역에 비상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확성기 등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낚시터 관리선의 설비) ① 낚시터에 낚시터 관리선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낚시터 관리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
3. 소화기 1개

② 제1항 각 호의 설비의 요건은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3장 수상시설물의 시설 및 장비

제1절 선체

제14조(부력체의 재료 및 구조) ① 부력체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부력체는 상부구조물의 중량과 낚시인 및 낚시도구 등의 모든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력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 부선형태의 부력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강제 부력체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접에 유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수압 및 상부구조물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재 등을 적절히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밀여부 확인을 위하여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제2호에 따른 압력시험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강화플라스틱(FRP)제 부력체는 「어선구조기준」 제3편에 따른 강화플라스틱 성능요건 및 제작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재질의 부력체는 수압 및 상부구조물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보강재 등 노출, 균열 및 균열로 인한 누수가 있

어서는 아니 된다.

2. 부력체 바닥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내구성 및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스티로폼의 부력체는 스티로폼이 떨어져 수질오염 또는 부력의 감소가 없도록 외부에 내식성의 포지로 둘러싸인 것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4. 드럼통 등을 부력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세척을 실시한 것이어야 하며, 드럼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식성이 있는 철사 등으로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5. 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이프 등을 부력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이프 내부에는 파이프 파손 시 전체 부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수밀의 칸막이를 설치하고,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재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내구성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15조(상부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 상부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철재 및 접합철물 등은 도금, 도장, 내식성재료 또는 그 밖에 유효한 방청(防淸)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2. 외벽 및 지붕은 방수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하며, 방수가 되도록 접합되어야 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 및 난방배관 등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목재 또는 콘크리트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제16조(연결) 상부구조물과 부력체는 견고히 연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 등은 도금, 도장, 내식성재료 또는 그 밖에 유효한 방법으로 방청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연결용 다리) ① 수상시설물과 육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리의 너비는 최소 0.76미터 이상이고, 양쪽 핸드레일 높이는 1미터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된 수상시설물과 연결된 다리의 길이가 2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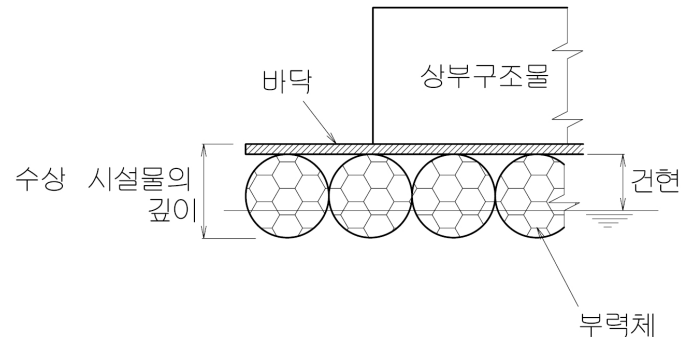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상시설물의 상하운동 등을 고려하여 힌지 또는 로프 등으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개구 등의 폐쇄장치) 수상시설물의 부력체가 부선형태로서 노출된 장소에 개구(開口)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풍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력 등) ① 수상시설물은 충분한 부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상시설물은 상부구조물의 중량, 수상시설물에 필요한 물건, 최대수용인원의 중량 및 물건 등을 고려하여 부력체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견현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강재, 강화플라스틱(FRP)재, 콘크리트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내부에 구획을 가지는 부선형태의 부력체 : 최소 200밀리미터 이상의 견현
2. 목재, 폴리에틸렌계 재질, 스티로폼 또는 드럼통 등으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내부에 구획을 가지지 아니하는 형태의 부력체 : 다음 그림과 같이 부력체 높이의 50퍼센트 이상의 견현



③ 제2항에 따른 견현은 부력체의 전, 후 또는 좌, 우간의 견현 차이를 20퍼센트 또는 100밀리미터 중 적은 것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20조(보호장치)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핸드레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핸드레일의 지주간 간격은 1.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바닥과 핸드레일 사이에는 체인 또는 로프 등으로 2개 이상의 횡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상시설물의 개방된 장소의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탈출설비) 상부구조물에는 출입문 외에 낚시인이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창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낚시인이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것
2. 방법창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3. 고정식 유리창인 경우에는 그 근처에 유리를 깨트릴 수 있는 장비가 비치될 것

제2절 배수설비

제22조(배수구) 수상시설물의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수상시설물 밖으로 통하는 배수구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흡입관) ① 부력체가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구획내부에 발생될 수 있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흡입관은 개방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계선 및 계류설비

제24조(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등) ①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닻·닻 로프 또는 닻쇠사슬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최대수용인원이 5명 이하의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중량, 닻쇠사슬, 닻 로프의 규격을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 닻쇠사슬, 닻 로프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한국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의장수별 한국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특수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닻·닻 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덴포스(Danforth)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의장수별 덴포스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 닻은 별표 3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1) 외의 특수형 또는 조립형 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한국형 닻 중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중량의 닻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최대수용인원이 10명 초과인 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닻 및

땃쇠사슬 등의 규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땃의 중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W = W_a \div 0.869$$

이 식에서
 W는 땃의 수중 중량으로서 다음 계산식의 값으로 한다.

$$W_a = \frac{P}{K_a} - \frac{K_C L_c W_c}{K_a}$$

이 식에서
 P는 땃쇠사슬 인장력(T_c)에 안전율 2를 곱한 값으로 하며,
 땃을 4개 이상 비치하는 경우에는 땃의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T_c 는 나목에 다른 땃쇠사슬의 인장력을 말한다.

L_c 는 땃쇠사슬 길이

W_c 는 땃쇠사슬 1미터의 수중 중량으로서 땃쇠사슬의 공기
 중 중량에 0.869를 곱한 값으로 한다.

K_a 와 K_c 는 각각 땃 파지력 계수 및 땃쇠사슬 파지력 계수
 로서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종류	진흙	굳은 흙	모래 흙	모래	돌모래
K_a	2	2	2	3~4	3~4
K_c	0.6	0.6	-	0.75	0.75

나. 땃쇠사슬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인장력(T_c) 이상의 것이
 어야 하며, 이 인장력(절단하중)에 해당하는 땃쇠사슬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종단면과 횡단면의 방향

의 땃쇠사슬의 경사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T_c = \frac{R}{\cos \theta}$$

이 식에서
 θ 는 수평면내 전저항 방향에 대한 땃쇠사슬의 경사각을
 말한다.

R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저항을 말한다.

다. 계류용 로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인장력(Tr) 이상의 것이
 어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T_r = \frac{R}{\cos \theta}$$

이 식에서
 θ 는 수평면내 전저항 방향에 대한 계류용 로프의 경사각
 을 말한다.

R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저항을 말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땃쇠사슬 대신에 섬유로프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섬유로프나 와이어로프는 나목에 따른
 땃쇠사슬의 인장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수상시설물에는 최소 4개 이상의 땃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류설비의 규격을 정하기 위한 의장수(E) 또
 는 전저항(R)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규격을 정하기
 위한 의장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E = \{L \times (B+D)\} + \left(\frac{S_1}{2}\right) + \left(\frac{3 \times S_2}{4}\right)$$

이 식에서

S1는 B의 2분의 1을 넘는 길이 또는 너비를 가지는 상부구조물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곱한 값의 합(제곱미터)

S2는 S1에 해당하는 상부구조물 외의 너비가 B의 4퍼센트 이내 있는 구조물로 상부구조물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곱한 값의 합(제곱미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규격을 정하기 위한 전저항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R = R_{a(L,T)} + R_t + R_{s(L,T)} \text{ (kg)}$$

이 식에서

풍압저항(R_{aL} 및 R_{aT})

종방향 바람에 대하여 $R_{aL} = K_{aL} A_a V_a^2$ (kg)

횡방향 바람에 대하여 $R_{aT} = K_{aT} A_a V_a^2$ (kg)

K_{aL} : 0.0429(종방향 바람의 풍압계수)(kg sec²/m⁴)

K_{aT} : 0.0735(횡방향 바람의 풍압계수)(kg sec²/m⁴)

A_a : 흡수선 상부 바람방향의 투영면적(m²)

V_a : 상대풍속(m/s)(평상시 15m/s, 태풍 시 44m/s 이상. 다만, 기상청 자료에 따라 최대 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조류저항(R_t , kg)

$$R_t = 0.1212 A_t \{(V_t + V_s)^2 + 0.330(V_t + V_s)\}$$

A_t : 침수표면적(m²)

V_t : 조류속도(m/s)

V_s : 수상시설물의 이동속도(m/s)

형상저항(R_{sL} 및 R_{sT})

종방향 유속에 대하여

$$R_{sL} = 0.5 \rho C_{bd} A_s (V_t + V_s)^2 \text{ (kg)}$$

횡방향 유속에 대하여

$$R_{sT} = 73.2 A_s (V_t + V_s)^2 \text{ (kg)}$$

ρ : 물의 밀도 (해수 : 104.5 kg sec²/m⁴, 담수: 102.0 kg sec²/m⁴)

A_s : 수상시설물의 수선하 유속방향의 투영면적 (m²)

V_t : 조류속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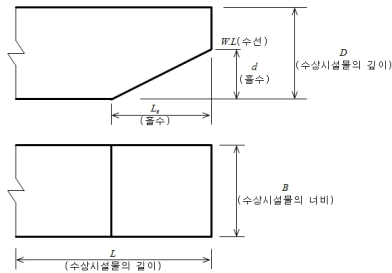
V_s : 수상시설물의 이동속도 (m/s)

C_{bd} : 수상시설물의 선수형상에 따른 저항계수로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저항계수(C_{bd})

$\frac{L_c/d}{V_i/\sqrt{Lg}}$	0	1	2	3	4	5	6	7
0.08	0.710	0.245	0.150	0.117	0.106	0.100	0.098	0.096
0.10	0.755	0.260	0.160	0.128	0.111	0.107	0.103	0.102
0.12	0.805	0.280	0.180	0.138	0.121	0.113	0.108	0.105
0.14	0.850	0.305	0.200	0.152	0.131	0.122	0.115	0.111
0.16	0.905	0.325	0.225	0.165	0.144	0.131	0.122	0.117
0.18	0.960	0.380	0.249	0.181	0.156	0.142	0.130	0.120
0.20	1.025	0.455	0.285	0.201	0.170	0.154	0.140	0.132
0.22	1.120	0.550	0.335	0.222	0.187	0.168	0.153	0.141
0.24	1.230	0.670	0.400	0.258	0.208	0.187	0.170	0.156

(비고) C_{bd}
 g : 중력가속도 (9.8 m/sec²)



③ 닻 대신에 콘크리트 블럭(이하 “싱커(sinker)”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닻 중량의 2배에 해당하는 싱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싱커는 해저면에 충분히 묻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지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점성토인 경우

가. 수평저항력 : 저면 및 측면의 점착력,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

나. 연직저항력 :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

2. 사질토인 경우

가. 수평저항력 : 저면마찰력,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

나. 연직저항력 :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

④ 수상시설물에 닻 또는 싱커를 대신하여 강관형 파일로 지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파일지지만으로 수상시설물을 견고히 고정할 수 있을 것
2. 파일지지만으로 수위변동 등에 따른 상하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3. 각 방향별로 지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을 설치할 것
4. 방식처리가 된 파일을 사용할 것

제25조(양묘설비)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비치하는 수상시설물에는 해당 닻을 양묘하기에 충분한 동력양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기상악화 시 닻을 양묘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예인설비) 수상시설물에는 수리,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이동 시 예인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충격방지 설비)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터 관리선 등이 접안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력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타이 어 등 충격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한 수상시설물로서 해당 낚시터에 사용되는 낚시터 관리선에 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펜더 등이 설치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충격방지 설비는 접안하는 낚시터 관리선 등이 부력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전기설비

제28조(주전원) ① 수상시설물에 육상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용량을 계산할 때에는 부동률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수상시설물에 육상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비상전원)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정박등 및 조명설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3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30조(축전지의 성능 등) ①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는 보호덮개를 한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및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정박등) ① 수상시설물에는 「어선설비기준」 제304조에

적합한 백등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하는 수상시설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박등은 주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2조(조명)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설비는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주전원 등의 고장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상전원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비상조명등 등) ① 수상시설물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수상시설물에는 1개 이상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전기설비 등의 배치)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풍이 나쁘고 물, 기름 또는 열로 장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
2. 연소하기 쉬운 것에 가까운 장소

제35조(전기설비 및 금속피복의 접지)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설비의 비대전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절연저항시험 등)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효력시험 및 다음 표에 따른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로의 정격전류 (암페어)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5 미만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절연저항 (메그옴)	2	1	0.4	0.35	0.1	0.05	0.025

제37조(분전반 등) ①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어선설비기준」 제263조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상시설물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배전반은 「어선설비기준」 제332조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5절 안전설비

제38조(구명조끼)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최대수용인원의 120퍼센트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중 최대수용인원의 20퍼센트는 어린이 또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 낚시터에 설치하는 수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비치 수량을 각각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선설비기준」 제26조에 적합한 구명조끼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구명조끼(Life-Jackets)
3.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구명조끼

제39조(구명부환)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하며, 구명부환에는 「어선설비기준」 제55조제5항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한 최대수용인원 5명 이하의 수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량을 1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명부환 요건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소화기)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상부구조물 내에 휴대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상시설물이 내수면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리로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 요건 및 비치방법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상부구조물에 액화석유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절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제41조(가구 및 비품 등) 상부구조물의 통로 및 출입구 근처에는 가급적 가구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① 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의 마감재로 사용되는 벽지 및 바닥재 등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에 난연성수지, 난연성와니스 또는 페인트 등으로 3회 이상 도포(塗布)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와니스(Vanish) 그 밖의 마감재는 과도한 양의 연기 또는 유독성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코니의 바닥재가 천연적으로 견고한 목재인 경우 또는 난연성수지, 난연성와니스 또는 난연성페인트 등으로 3회 이상 도포(塗布)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부구조물 내의 창에 커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염(防炎)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난로 등의 설치) ① 상부구조물에 난로, 렌지 등(이하 “난로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난로 등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난로 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난로 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면 난로 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난로 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4. 방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난로 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있지 않으면 연돌부터 0.3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수상시설물에 액화석유가스설비를 비치할 경우에는 「어선설비기준」 제139조를 준용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상부구조물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단의 양쪽에는 낚시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핸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사다리) 낚시인이 추락 시 손쉽게 수상시설물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다리는 손쉽게 설치 및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6조(냉·난방장치의 설치) 상부구조물에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채광장치 등의 설치) ① 상부구조물에는 적절한 채광 및 통풍장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조명장치 및 통풍장치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부구조물의 한쪽 면 이상이 부력체의 바닥면 끝단과 일치하는 구조로 제20조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면에 여단을 수 있는 창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부구조물 내의 구조가 2층 이상인 경우 2층에 여단을 수 있는 창문의 아래 면이 2층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펌프 등) 수상시설물의 부력체가 부선형태로서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에서 발생하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펌프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펌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상시설물에는 펌프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절 편의에 관한 시설 및 장비

제49조(화장실 등 위생설비) ① 수상시설물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화장실과 세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시설물이 내수면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리로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세면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실의 요건은 제9조제2항을, 세면소의 요건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0조(쓰레기통) ① 수상시설물에는 1개 이상의 쓰레기통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통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제51조(통신장치) 수상시설물에는 낚시터 관리시설과 통화할 수 있는 워키토키 등 적당한 통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거나, 수상시설물 내에 낚시터 관리시설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5년 11월 21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의장수별 한국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의장수 (초과 ~ 이하)	닻의 수 수량	닻 1개의 질량		닻 로프			무어링로프 (나이론로프)		
		한국형 닻 킬로그램	싱카 킬로그램	길이 미터	지름 (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비니론 로프		수량	길이 미터	지름 밀리 미터
80 ~ 90	4	75	150	60	17	20	-	-	-
90 ~ 105	4	95	190	70	20	24	1	165	14
105 ~ 140	4	115	230	80	22	27	1	165	14
140 ~ 175	4	130	260	90	25	30	1	165	15
175 ~ 215	4	170	340	100	27	33	1	165	17
215 ~ 255	4	205	410	100	30	36	1	165	17
255 ~ 295	4	255	510	110	32	38	1	165	17
295 ~ 340	4	300	600	110	35	42	1	165	20
340 ~ 390	4	315	630	130	39	46	1	165	22
390 ~ 445	4	365	730	140	42	50	1	165	22

비고) 상기 로프 외의 다른 로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프의 인장강도가 상기 로프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의장수별 덴포스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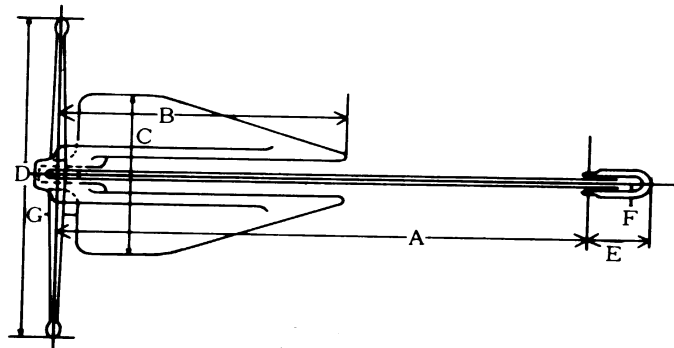
의장수 (초과 ~ 이하)	닻의 수량	닻 1개의 질량 킬로그램	닻로프			무어링로프 (나이론로프)		
			길이 미터	지름(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비니론 로프		수량	길이 미터	지름 밀리미터
80~90	4	20	60	17	20	.	.	.
90~105	4	25	70	20	24	1	165	14
105~140	4	30	80	22	27	1	165	14
140~175	4	40	90	25	30	1	165	15
175~215	4	50	100	27	33	1	165	17
215~255	4	60	100	30	36	1	165	17
255~295	4	70	110	32	38	1	165	17
295~390	4	95	110	35	42	1	165	22
390~445	4	125	120	42	50	1	165	22

비고) 상기 로프 외의 다른 로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프의 인장강도가 상기 로프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

덴포스형 달의 치수(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질량 (킬로그램)	치수(밀리미터)						
	A	B	C	D	E	F	G
20	825	463	361	685	95	18	23
25	890	500	390	740	104	20	25
30	945	565	414	784	109	21	26
40	1,094	590	460	872	122	24	29
50	1,154	647	506	960	134	26	32
60	1,190	668	521	988	137	27	33
75	1,280	719	561	1,063	149	29	35
100	1,400	790	616	1,170	163	31	43
120	1,500	840	657	1,240	174	34	45



[별표 4]

달쇠사슬의 절단시험하중과 최소중량표(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호칭지름 d (밀리미터)	절단시험하중(kN)			체인 1미터의 중량(Kg)
	제1종 체인	제2종 체인	제3종 체인	
12.5	66	92	132	3.422
14	82	115	165	4.292
16	107	150	215	5.606
17.5	128	179	256	6.707
19	150	211	301	7.906
20.5	175	244	349	9.203
22	200	280	401	10.6
24	237	332	476	12.61
26	278	389	556	14.8
28	321	449	642	17.17
30	368	514	735	19.71
32	417	583	833	22.43
34	468	655	937	25.32
36	523	732	1050	28.38
38	581	812	1160	31.62
40	640	896	1280	35.04
42	703	981	1400	38.63
44	769	1080	1540	42.4
46	837	1170	1680	46.34
48	908	1270	1810	50.46
50	981	1370	1960	54.75
52	1060	1480	2110	59.22
54	1140	1590	2270	63.86
56	1220	1710	2430	68.68
58	1290	1810	2600	73.67
60	1380	1940	2770	78.84
62	1470	2060	2940	84.18
64	1560	2190	3130	89.7
66	1660	2310	3300	95.4
68	1750	2450	3500	101.3
70	1840	2580	3690	107.3
73	1990	2790	3990	116.7
76	2150	3010	4300	126.5
78	2260	3160	4500	133.2

호칭지름 d (밀리미터)	절단시험하중(kN)			체인 1미터의 중량(Kg)
	제1종 체인	제2종 체인	제3종 체인	
81	2410	3380	4820	143.7
84	2580	3610	5160	154.5
87	2750	3850	5500	165.8
90	2920	4090	5840	177.4
92	3040	4260	6080	185.4
95	3230	4510	6440	197.6
97	3340	4680	6690	206.1
98	3407	4768	6810	210.3
100	3530	4940	7060	219
102	3660	5120	7320	227.8
105	3850	5390	7700	241.4
107	3980	5570	7960	250.7
108	4046	5663	8088	255.4
111	4250	5940	8480	269.8
114	4440	6230	8890	284.6
117	4650	6510	9300	299.8
120	4850	6810	9720	315.4
122	5000	7000	9990	326
124	5140	7200	10280	336.7
127	5350	7490	10710	353.2
130	5570	7800	11140	370.1
132	5720	8000	11420	381.6
137	6080	8510	12160	411
142	6450	9030	12910	441.6
147	6840	9560	13660	473.2
152	7220	10100	14430	506
157	7600	10640	15200	539.8

비고)

호칭지름이 12.5mm 미만이거나, 또는 이 표 값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절단시험하중 및 단위 길이당의 중량은 다음 표에 정한 식에 따른다. 이때에 d는 호칭지름(mm)으로 한다.

종류	절단시험하중(kN)	체인 1미터의 중량(kg)
제1종 체인	$0.00981d^2(44-0.08d)$	$0.0219d^2$
제2종 체인	$0.01373d^2(44-0.08d)$	$0.0219d^2$
제3종 체인	$0.01961d^2(44-0.08d)$	$0.0219d^2$

[별표 5]

섬유로프의 종류 및 절단시험 하중(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1. 섬유로프의 종류

섬유로프의 종류			원사(재료)
마닐라로프			마닐라마
합성섬유로프	비닐론 로프	1종	비닐론
		2종	
	폴리에틸렌 로프	1종	폴리에틸렌
		2종	
	폴리에스테르 로프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로프	1종	폴리프로필렌	
	2종		
나일론 로프			나일론

2. 섬유로프의 절단시험 하중(단위 : kN)

로프의 지름 (mm)	마닐라 ⁽¹⁾ 로프	합성섬유로프						나일론 ⁽¹⁾	
		비닐론 ⁽¹⁾		폴리에틸렌 ⁽²⁾		폴리에스테르 ⁽¹⁾	폴리프로필렌 ⁽²⁾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0	7.06	9.32	15.7	9.71	12.7	15.6	10.8	12.7	18.1
12	9.90	13.4	21.8	13.9	17.7	22.0	15.7	17.7	27.5
14	13.1	17.9	28.4	18.6	23.5	29.2	20.6	23.5	36.6
16	16.9	22.9	36.3	23.8	29.4	37.5	26.5	29.4	46.9
18	21.0	28.6	45.1	29.7	37.3	46.7	32.4	37.3	58.3
20	25.6	34.8	54.9	36.1	44.1	56.8	39.2	44.1	70.9
22	30.5	41.6	65.7	43.1	54.9	67.8	47.1	54.9	84.6
24	35.9	48.8	77.5	50.7	63.7	79.6	54.9	63.7	100
26	41.6	56.7	89.2	58.8	73.5	92.4	63.7	73.5	116
28	47.8	65.1	103	67.5	83.4	106	73.5	83.4	132
30	54.3	74.0	117	76.8	97.1	121	83.4	97.1	151
32	61.2	83.5	131	86.5	108	136	94.1	108	170
35	72.3	99.0	155	102	127	161	111	127	201
40	95.4	127	198	131	164	206	142	164	258
45	119	157	247	163	203	260	177	203	321
50	144	191	300	198	250	312	214	250	390
55	173	228	358	237	294	373	255	294	466
60	203	269	421	279	348	438	300	348	547
65	235	312	487	324	402	508	348	402	635
70	271	358	559	371	461	583	399	461	729
75	307	407	635	422	525	663	453	525	829
80	346	459	716	476	593	747	511	593	935
85	387	514	801	533	667	837	572	667	1050
90	431	571	895	592	735	931	635	735	1170
95	477	632	981	655	814	1030	702	814	1280
100	525	694	1080	721	897	1140	772	897	1410

(비 고)
 (1) 건조상태의 로프를 실내온도에서 인장할 경우의 절단시험하중.
 (2) 35 ± 2 °C 의 온수 중에 30 분 이상 담근 후 꺼내어 즉시 젖은 상태의 로프를 실내온도에서 인장할 경우의 절단시험하중.

[별표 6]

와이어로프의 종류, 절단시험하중 및 질량(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1. 와이어로프의 종류

호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21호	
단면								
구성	스트랜드 소선수	7	12	19	24	30	37	36
	스트랜드의 수	6	6	6	6	6	6	6
	섬유심	중심	중심 및 스트랜드의 중심	중심	중심 및 스트랜드의 중심	중심 및 스트랜드의 중심	중심	중심
구성기호	(6×7)	(6×12)	(6×19)	(6×24)	(6×30)	(6×37)	(6×WS(36))	

2. 와이어로프의 절단시험 하중 및 중량

호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21호	
구성기호	(6×7)		(6×12)		(6×19)		(6×24)		(6×30)		(6×37)		(6×WS(36))	
지름(mm)	절단 하중(kN)	1m의 중량(kg)	절단 하중(kN)	1m의 중량(kg)	절단 하중(kN)	1m의 중량(kg)	절단 하중(kN)	1m의 중량(kg)	절단 하중(kN)	1m의 중량(kg)	절단 하중(kN)	1m의 중량(kg)	절단 하중(kN)	1m의 중량(kg)
10	52.4	0.371	33.3	0.273	47.9	0.364	45.5	0.332	41.1	0.310	48.9	0.359	50.5	0.396
12	75.4	0.534	48.0	0.393	71.6	0.524	65.5	0.478	59.1	0.446	70.5	0.517	72.8	0.570
14	103	0.727	65.3	0.535	97.4	0.713	89.1	0.651	80.5	0.607	96.2	0.704	99.0	0.776
16	134	0.950	85.2	0.699	127	0.932	117	0.850	105	0.793	126	0.920	129	1.01
18	170	1.20	108	0.885	161	1.18	147	1.08	133	1.00	159	1.16	164	1.28
20	210	1.48	133	1.09	199	1.46	181	1.33	164	1.24	195	1.44	202	1.58
22	253	1.80	161	1.32	240	1.77	221	1.61	199	1.50	237	1.74	244	1.92
24	302	2.14	192	1.57	286	2.10	262	1.91	236	1.79	281	2.07	291	2.28
26	354	2.51	225	1.85	336	2.47	308	2.24	278	2.10	330	2.43	341	2.68
28	411	2.91	261	2.14	389	2.85	357	2.60	322	2.43	382	2.82	396	3.10
30	472	3.34	300	2.46	447	3.28	410	2.99	369	2.79	439	3.23	454	3.56
32	536	3.80	341	2.80	509	3.73	466	3.40	421	3.17	501	3.68	517	4.06
34	605	4.29	385	3.16	575	4.21	526	3.84	475	3.58	566	4.16	583	4.58
36	679	4.81	432	3.54	644	4.72	589	4.30	533	4.02	634	4.66	654	5.13
38	756	5.36	481	3.94	718	5.26	657	4.79	593	4.48	707	5.19	730	5.72
40	838	5.93	533	4.37	795	5.82	728	5.31	657	4.95	782	5.75	808	6.34
42					877	6.42	802	5.86	725	5.47	863	6.34	890	6.99
44					963	7.05	881	6.43	794	6.00	947	6.96	978	7.67
46					1,050	7.70	963	7.03	869	6.56	1,040	7.61	1,070	8.38
48					1,150	8.39	1,050	7.65	945	7.14	1,130	8.28	1,140	9.12
50					1,250	9.10	1,150	8.30	1,020	7.74	1,230	8.98	1,260	9.90
52							1,230	8.98	1,110	8.38	1,320	9.73	1,360	10.7
54							1,320	9.68	1,200	9.04	1,420	10.5	1,470	11.5
56							1,420	10.4	1,280	9.71	1,530	11.3	1,590	12.4
58							1,530	11.2	1,380	10.4	1,650	12.1	1,700	13.3
60							1,640	12.0	1,470	11.1	1,760	12.9	1,810	14.3
62							1,750	12.8	1,580	11.9	1,880	13.8	1,940	15.2
65							1,920	14.0	1,740	13.1	2,070	15.2	2,140	16.7

낙시 관리 및 육성법(관계법령집)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농림수산물부 자원환경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Tel : (044)201-2767

Fax : (044)868-0151

인 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73-1775